

안전을 빌미로 한 공개처형과 연대책임, 노동자 인권 짓밟는 절대수칙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인권 없는 안전은 허구다, HD현대중공업은 ‘인권 침해’ 매뉴얼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OTT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 조치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가장 중요하게 천명하는 절대적 가치는 바로 ‘인권 보호’이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자본이 발표한 절대수칙 제도 변경안(참고자료 1. “HD현대중공업 절대수칙 운영매뉴얼” 참조)은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 2016년 7월, 사측이 절대수칙을 시행할 당시에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원인 제거보다 위반 실적만 올려 징계를 남발하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함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규정제정 및 개폐)에 따라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절대수칙은 사측의 일방적 도입 이후 현장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측은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사망만인율이 감소했다며 지독한 자화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시적인 위험 속에서도 피땀 흘려 현장을 지켜온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자발적인 안전 노력의 결과물이자, 결코 사측의 ‘통제와 적발’ 덕분이 아니다. 현장의 성과마저 자본의 규제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사측의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과 함께 여전히 절대수칙을 통해 현장을 통제와 감시, 굴욕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자본의 잔인한 민낯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자를 말 잘 듣는 기계로 길들이려는 이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임 전가와 망신주기로 가득 찬 ‘절대수칙 변경안’ 의 추악한 본질

첫째, 현장 OPL(One Point Lesson)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공개 반성문’ 이자 ‘인격 살인’ 이다. 회사는 절대수칙 위반자에게 TBM 시간,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어긴 수칙과 상황, 심리 상태를 직접 발표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사상 전향서나 ‘공개 반성문’ 을 낭독하게 하던 악습과 다를 바 없다.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제도는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이 아니라, 위반자에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찍기’ 이자 공개 망신주기 처벌 수단일 뿐이다.

둘째, 사고와 위험의 원인을 구조적 ‘작업 환경’ 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 로 귀결시키려는 꼬리 자르기다. 조선업 특성상 업무 형태가 극도로 다양하고 온갖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 구조는 외면한 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해의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논의 대신 위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본의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행태다.

셋째, 권위주의적 통제는 위험을 음성화하고 현장의 안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소통과 자발적 참여가 실종된 채 감시와 지시, 적발에만 초점을 맞춘 안전 대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노동자들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감시를 피하는 것’에 급급해질 것이며, 이는 곧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해소하기보다 위반사항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단기적인 적발 위주의 대책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근본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타율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계약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더욱 파괴할 뿐이다.

넷째, 부서·협력사 단위의 ‘연대책임’ 은 동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용 불안을 극대화하는 악질적 연좌제다. 회사는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부서 전체 혹은 협력사 전체 작업중지라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내가 실수하면 내 동료와 회사가 날아간다는 극심한 ‘동료 압박(Peer Pressure)’ 을 가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추악한 이간질이다. 특히 생존권이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재계약 불이익이나 업체 퇴출, 즉 ‘해고’ 로 직결될 수 있어 고용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살인적인 조치다.

반세기가 지나도 소모품인 노동자,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최근 한화오션에서는 안전고리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를 출근 시간,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벌을 세워놓는 기상천외하고 비상식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HD현대중공업 자본 또한 ‘공개 OPL 발표’ 라는 세련된 탈을 쓴 채 똑같은 인격 살인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조선업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그저 이윤 착취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산업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이라는 자본과 정부가 화려하게 그려내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그 어떤 장밋빛 미래에도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더 이상 굴종과 모욕을 견디며 일할 수 없다. 동료를 감시하는 간첩이 될 수 없고, 자본의 부실을 내 탓이라 외치며 눈물 흘릴 수 없다. 그렇기에 박일수 열사께서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라고 절규하며 산화한 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사측의 잔인한 인간 경시에 분노 가득찬 모든 노동자가 박일수가 되어 이 피맺힌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2026년 7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

절대수칙 제·개정 연혁

!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수칙

최초 시행 ('16. 7. 1.) | 절대수칙제도 도입

HD현대중공업 **초 출입 인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수칙으로서 **절대수칙**을 **최초** 시행했습니다.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차 개정 ('25. 4. 1.) | 현장 실행력 강화

최초 시행 이후 현장 변화와 새로운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항목을 재검토하고, 위험작업허가 등 **작업성 절대수칙**을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이어폰·흡연금지 항목을 기존 안전수칙으로 통합하고, LOTO는 모든 에너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차 개정 ('26. 7. 1.) | 재발방지 집중

금번 개정은 절대수칙 **재발 방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와 **부문별 자율 개선활동**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위반자 주관 현장 OPL, 현업 부문별 자율조치, 안전벨트 위반 작업종지 대상 확대, 경고 서한 및 교육 결과 회신을 **신설**하였고,

안전 아카데미, Active Caring 워크숍, 안전 리마인드 간담회는 **폐지**하였습니다.

※ *사망인원을 비교 : 0.943(절대수칙 적용 전) → 0.595(절대수칙 적용 후) *사망인원율 : 인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절대수칙 제·개정 조치 개선

! 현장 실행력 강화 / 재발방지를 위한 제·개정 조치 신설

1. 위반자 주관 현장 OPL 실시

※ OPL 대상은 작업성 限 적용

- OPL은 One Point Lesson의 약자로, 위반자가 본인이 어진 **절대수칙**(작업성 限)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발표자료는 부서에서 지원하여 함께 작성)
- 위반자는 TBM 시간 동료를 대상으로 **발표**를 실시합니다. (당일 위반자 퇴출 후 작성)
- 발표 내용 : 절대수칙의 목적, 위반내용, 위반 당시 상황(행동 결정 원인 등), 잠재 위험(상황 가정), 당부하고 싶은 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 : OPL 발표에 참석하여 위반자 발표를 보조하고 부연설명/진행을 통해 동료 작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2. 현업 부문별 자율조치 방안 수립 및 이행

- **부문장** 주도로 **자율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육, 캠페인, 점검활동 등 부서별 특성에 맞는 활동 포함)

※ 재발방지대책 부문장 결재본 안전 제출 불필요, HiSees 등록 필요 (안전에서 자율조치방안 모니터링 예정)

3. 선주/선급 경고 및 교육결과 회신

- 선주·선급 등 관계 조직에서 위반 발생 시 본사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 결과 회신 요청 (발송 주체: 사업부 안전)

폐지된 제도 ['26. 7. 1.부]

- ① 안전 아카데미 ② Active Caring 워크숍 / 안전 리마인드 간담회

1

4. 안전벨트 위반 한정 작업종지 범위 확대

- 1) 전체 절대수칙 중 약 70%의 비중을 차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작업종지 기준 강화**
- 1시간 이내(최소 30분 이상) 단시간 **작업종지** 원칙 / 재발방지 목적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교육 실시 (현장 OPL 위주)

2) 적용 원칙

- ① 절대수칙 위반 횟수는 '위반 차수별(협력사 포함)로 과 단위 및 부서'로 누적관리 한다.
- ② 작업종지 범위는 '위반 차수별 누적 기준 조직'을 적용한다.
- ③ 위반 횟수는 해당 누적관리 기간 내 **최초 위반일**로부터 **최고 3개월간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해당 최초 위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위반은 새로운 누적관리 기간의 **1회 위반**으로 간주한다.

3) 위반 차수별 작업종지 범위

- ① **1회** : 위반자 소속 **동일조직** 작업종지 (작업지시서 상 **동일 지시자** 기준)
- ② **2회** : 위반자 소속 과 / 과 소속 **협력사 전체** 작업종지 (과 단위 누적 기준, 2회 限)
- ③ **3회** : 부서 / 부서 소속 **협력사 전체** 작업종지 (부서 단위 누적 기준)

※ 동일 누적 기간 내 위반 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 4회 위반부터는 3회 위반과 동일한 작업종지 범위 적용

- 4) 작업종지 해제 :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교육** 실시 → **사업부 안전**에 교육결과 **제출** → 작업종지 해제

CASE 1

소 속	위반 차수	위반자 소속		작업종지 대상	
		직영	협력사	직영	협력사
A 부서 (협력사 포함)	1	1과 1팀		1과 1팀 (동일 작업지시자 기준)	
	2		현종테크 1반 (1과 소속)	1과 전체	1과 소속 협력사 전체
	3	2과 1팀		A부서 전체	A부서 소속 협력사 전체

3

2

4. 안전벨트 위반 한정 작업종지 범위 확대

CASE 2

소 속	위반 차수	위반자 소속		작업종지 대상	
		직영	협력사	직영	협력사
A 부서 (협력사 포함)	1		현종테크 1반 (1과 소속)		현종테크 1반 (동일 작업지시자 기준)
	2	1과 2팀		1과 전체	1과 소속 협력사 전체
	3		울산테크 2반 (2과 소속)	A부서 전체	A부서 소속 협력사 전체

CASE 3

소 속	위반 차수	위반자 소속		작업종지 대상		비고
		직영	협력사	직영	협력사	
A 부서 (협력사 포함)	1	2과 1팀		2과 1팀 (동일 작업지시자 기준)		과 단위 기준 적용으로 1회 위반 적용
	2	1과 1팀		1과 1팀 (동일 작업지시자 기준)		
	3		울산테크 2반 (2과 소속)	A부서 전체	A부서 소속 협력사 전체	

4

절대수칙 세부 기준 안내

순	절대수칙 항목	핵심 안전수칙	예 외
1	 스마트폰/이어폰 사용금지 (이동중/작업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금지/휴연 금지 (이동 중/작업 중)	- 보행/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통화(스피커폰 포함)하거나 화면을 보며 작동하는 행위 - 보행/운전/작업 중 이어폰(헤드폰)을 귀에 꽂고 있는 행위 (출퇴근 시 포함) -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착용만 하여도 단속 대상 포함 - 골전도,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종류의 이어폰 단속 대상 - 보행/운전 중 흡연하는 행위 - 작업 중 흡연 구역 및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호선/모들 상부, 기계 작동 지역 등) - 화기 엄금 지역(유류저장시설, 전기시설, 가스저장시설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 - 암롤박스에 담배꽂이를 직접 투척하는 행위	건물내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가능 전자담배의 암롤박스 투척 제외
2	 30km/h 이하 사내 규정 속도 준수 (지게차 8km/h)	- 사내에서 30km/h를 초과하여 차량/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 사내에서 20km/h를 초과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 사내에서 8km/h를 초과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는 행위	[지게차] 공차일 경우 메인도로 15km/h 이하 주행 가능
3	 기계기구 안전장치 임의 제거/해체 금지 기계·기구 안전장치 임의 제거/해체 금지	- 기계·기구에 설치된 안전장치(차단기, 접지, 보호커버, 안전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등)를 임의로 변형, 작동 불가 상태로 두거나 제거한 경우 - 장비에 설치된 안전장치(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시간장치, 폭 해지장치 등)를 임의로 변형, 작동 불가 상태로 두거나 제거한 경우 - 허가 없이 바이패스 기능을 활성화 시킨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경우	-

5

절대수칙 세부 기준 안내

순	절대수칙 항목	핵심 안전수칙	예 외
7	 권상부재 하부 출입금지	- 권상작업을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 권상작업 구역 또는 이동경로 하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 - 신호수 및 관리감독자의 대피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 권상작업 시, 신호수 및 관리감독자가 대피가 필요한 작업자에게 대피 요청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8	 모든 에너지원 LOTO 규정 준수	- 에너지원(전기, 유압, 공압, 스팀 등)을 차단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기계/전기 패널 및 기기 수리/보수/검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 작동상태를 관찰하며 테스트 해야 할 경우 - 아래 두 가지 사항 충족 시 가능 - 생산-안전 합동 위험성평가 실시 - 현장의 작업 환경을 확인한 후 작업 착수	작업종료 후 잠금장치, 표지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경고 조치
9	 위험작업허가 규정 준수	- 위험작업허가 없이 작업한 경우 - 승인 받지 않은 허가서를 게시하고 작업하는 경우 - 작업 내용, 일자, 장소가 다른 허가서를 허위로 게시하고 작업하는 경우 ※ 위험작업허가서 1건 당 작업장소 최대 5개소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작업장소가 변경될 시 허가서 위치 변경 필요 [예외] - 승인된 허가서를 게시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경고 조치 (반복 발생 시 수칙위반 적용)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잘못된 정보를 일부 기입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수칙 또는 경고 조치)	승인된 허가서를 게시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경고 조치 (반복 발생 시 수칙위반 적용)

7

절대수칙 세부 기준 안내

순	절대수칙 항목	핵심 안전수칙	예 외
4	 추락방지시설 임의 설치/해체 금지	- 추락방지시설(발판, 안전난간 등)을 임의 해체 또는 임의 설치 후 작업하거나 방치한 경우 (반드시 발판팀 의뢰하여 작업 실시) - 개구부를 열어놓은 상태로 불투명 천막 등으로 위장하여 덮어놓은 경우 (높이 2m 이하 시 일반수칙 위반) - 발판 설치/해체 무자격자가 임의로 설치/해체하는 행위	-
5	 도장/화기 혼재작업 금지	- 동일 작업공간 내 또는 상하 이면지역 도장/화기 작업을 병행하여 작업을 할 경우 - 외판 용접 작업 시 하부 도장(믹싱) 작업을 하는 행위 - 밀폐공간 도장/화기 혼재작업을 하는 행위 (소지작업도 도장작업으로 간주) - 밀폐공간 도장 완료 후 완전히 건조되기 전 화기작업을 하는 행위 ※ 작업 시작 시간 기준, 늦게 착수한 작업을 위반으로 간주	-
6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준수	- 추락방지시설/설비(핸드레일, 발판, 개구부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고소지역(최소 3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고소작업대(고소차, 스카이라이프, 곤돌라 등)를 고소지역에서 탑승하여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생명줄이 설치된(기타 추락방지시설 無) 고소지역(최소 3M 이상)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안전시설물 사이로 몸을 내미는 등의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였으나 버클(가슴부분)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핸드레일이 설치된 발판 상부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미적용 높이 3M 이내 경우 일반수칙 적용

6

절대수칙 세부 기준 안내

I 조선 / 해양에너지 / 합정·중형선

순	절대수칙 항목	핵심 안전수칙	예 외
10	 크레인 레일상 무단주차 금지	크레인 레일상 작업 확인서 사전 신고 없이 모든 차량 및 작업장비 차량(고소차, 하이드로 크레인, 크로라 크레인 등)을 크레인 레일상에 주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
11	 러그 용접 기준 준수	- 러그 및 피스류(곤돌라/발판 등) 용접이 누락되었거나 완전 용접(라운드용접)을 하지 않은 경우 - 블록 탑재 시 러그 이면 용접이 누락되거나 용접 각도가 부족한 경우 - 러그 위치 불량 및 지정된 러그를 미사용한 경우 - 사외 제작업체 블록의 경우: 품질부서 절대수칙 적용 ※ 사외 블록 관리(검사) 책임	-
12	 밀폐공간 관리기준 준수	- 가스 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경우 - 가스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환기/조도 상태 불량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수칙/경고 조치 밀폐공간 출입중 계시/회수 상태 미흡 시 경고 조치 (단, 반복 발생 시 수칙위반 적용)

I 엔진기계

순	절대수칙 항목	핵심 안전수칙	예 외
10	 지게차 하역/운반 시 유도자 배치	하역 또는 운반 중인 지게차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5톤 미만 공차 이동 시 포크에 깃발 부착 시에는 미배치 가능

8

참고자료 : OPL 시나리오

✓ OPL 진행 과정



[1단계: 팀장 진행 발언]

팀장: 오늘 TBM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안전벨트 고리 미체결 위반에 대해 OPL을 실시하겠습니다.

OPL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입니다. 김기사님께서도 지난 절대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위반자 OPL 발표]

위반자: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어제 작업 장소는 상부 난간대가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난간 바깥쪽 작업을 하기 위해 상체를 난간 밖으로 내민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작업 위치는 바닥에서 약 8m 이상 높이였고, 만약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잠깐이면 끝난다”, “설마 떨어지겠나”라는 생각으로 위험을 가볍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벨트 고리 체결 상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귀찮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3단계 : 직책과장 마무리 발언]

직책과장: 김기사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안전벨트는 착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고리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해야 합니다.

작업 전 스스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동료의 안전도 서로 확인해서 동일한 위반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기사의 OPL을 계기로, 우리 반에서는 단 한 명도 고리 미체결로 지적받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구호 외치고 작업 시작합시다. 안전벨트 체결! 좋아! 좋아! 좋아!”